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4094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9.06.1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대리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직무대행
협 조	총무처장			

2019년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계획(안)

2019.

2019년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계획(안)

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2019년 운영계획에 반영·추진하고자 함.

추진경과

□ 2018년 공단 성과공유제 추진실적

- ✓ 공단 성과공유제 **운영계획 방침** 수립 ('18.6.5.) * 이사장방침 제93호
- ✓ 성과공유제 추진 관련 **전문가 초빙교육** 진행 ('18.6.25.) * 공단 직원 대상
- ✓ 성과공유제 추진 **과제 발굴 워크숍** 참석 ('18.6.29.) *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✓ 성과공유 **과제 발굴 (내·외부) 공모** 시행 ('18.7~8월)
 - 발굴 과제 건수 : 20건 (총 19개부서)
- ✓ 2018년 성과공유제 **심의위원회** 개최 ('18.9.3.)
 - 2018년 공단 성과공유 추진 과제 선정 (총 5건)
- ✓ 과제별 성과공유 **계약 체결** 및 과제 등록 신청 ('18.10~11월)
 -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www.benis.or.kr) 등록 완료
- ✓ 2018년 공단 성과공유제 **과제 등록 완료** ('18.12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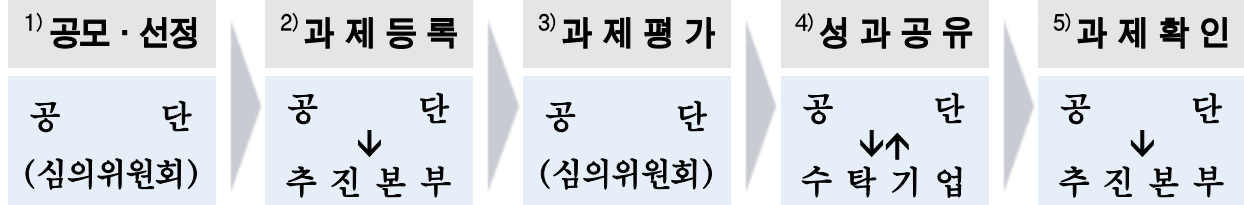
연 번	부 서 명	과 제 명	과 제 기 간
1	도로시설처	교량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변위계적 자동추적 시스템 구축	'18.10.1. ~ '19.12.31
2	인재개발원	사업별 문제해결 전문가 Academy 운영	'18.10.5. ~ '19.12.31
3	공사감독2처	기습호우대비용 강우경보시스템 공동개발	'18.10.1. ~ '22.12.31
4	감 사 실	임직원 행동강령 가이드북 제작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 간 win-win 달성	'18.10.29. ~ '19.12.31
5	월드컵경기장	최적의 잔디그라운드 구축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잔디 개발	'18.11.12. ~ '20.10.31

- ✓ 성과공유제 **등록기업 확인서** 발급 ('18.12.13) * 유효기간 : '18.12.13. ~ '20.12.13.

II 추진 계획 ... '19년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계획

《 운영 프로세스 》

✓ 성과공유제 운영 프로세스 (과제공모~과제확인)



1] 성과공유제 과제 「공모·선정」

○ 2019년 공단 성과공유과제 발굴 공모 진행

- 발굴방법 : 외부·내부 공모(제안)을 통한 성과공유 과제 발굴

✓ 외부·내부 공모 동시 시행을 통한 **다양한 성과공유 과제 발굴** 추진

✓ **중소기업 직접 참여 기회 제공** 및 민관협력 과제 발굴 활성화 노력 강화

• 공모(참여)대상 : 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대상)

- 공모분야 :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**공단 추진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**

▶ 공단 홈페이지 게시 (외부용) 및 과제 발굴 요청 문서 발송 (내부용)

○ 2019년 공단 성과공유과제 선정

- 선정방법 : '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' 개최를 통한 **위원회 결과에 따름**

▶ 심의위원회 구성 : 위원장 + 내부위원 + 외부위원 (4인 이상 7인 이내)

* 심의위원회 개최 전 **과제 사전검토** 절차 진행 (기획조정실, 추진본부 협조)

- 선정요건 : 성과공유제 **충족 요건**, 과제 **적합성** 등 고려 * 3건 이상 선정

✓ '19년 성과공유제 **과제 등록 실적 평가** (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中)

• 평가년도 과제등록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건수

배 점	1.0점	0.6점	0점
등록과제 수	3건 이상	2건	1건

② 성과공유제 「과제등록」 추진

○ 공단 성과공유제 선정 과제별 표준계약서 작성 (과제별 해당부서)

- 과제의 목표, 공동노력 (위탁기업, 수탁기업), 성과공유 방법 등

○ 2019년 공단 성과공유제 과제등록 진행 (공 단 → 추진본부)

-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www.benis.or.kr) 통한 등록 * 심사 : 추진본부

✓ (참고사항) 성과공유제 관련 주요개편 사항

※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 제8조 「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」 개정 등 적용

• 성과공유 확인제 개편 : 수요자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 제도 운영 ('18년)

- 【기 존】 3단계 방식 : 도입 → 등록 → 확인

- 【개 편】 2단계 방식 : 등록 → 확인 * 과제 등록 시 등록기업 확인서 발급



• 성과공유 방식 변경 : 【기 존】 10가지 → 【개 편】 2가지 ('18년)

	공 유 방 식	주 요 내 용
1	현 금 보 상	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·발생비용을 현금으로 지급
2	물량·매출 확대	수탁기업의 해당 제품 또는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

- 수의계약, 우선구매, 구매물량 보장, 시제품 구매 보상 등 물량·매출 확대로 통합

• (기 타) 'Fast-Track형' 확인제 시범 운영 추진 ('19년 예정)

- 운영방안 : 운영기업 간 자율적인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등록 없이 제반 증빙을 사후에 한번만 확인받는 절차

- 운영절차 : 사전검토 → 계약체결 → 과제수행 → 성과공유 → 과제확인

- 참여혜택 : 과제확인 완료 시 등록기업 및 확인과제 실적 인정

- 공단 참여검토 : **향후 재검토 시행** * **참여에 따른 혜택 없음**

① 공단의 경우, 이미 '18년도에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으로 인정받은 상태이고,

② 확인과제 실적 인정은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과 관계없음

○ 2019년 성과공유제 등록완료 과제 사업추진 (과제별 해당부서)

③ 성과공유제 「과제평가」 추진

- 평가대상 : 공단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中 성과평가 등이 필요한 과제
 - 추진완료 과제 및 공동 개발완료 과제 등의 성과 평가
- 평가방법 : ‘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’ 개최를 통한 성과달성 평가·심의
 - 과제별 시행 완료 여부 및 목표성과 도출 여부 등 평가

④ 성과공유제 과제별 「성과공유」 추진

- 과제별 표준계약서 상 ‘성과공유’ 방법 이행
 - 과제성과의 현금배분, 매출액 공유, 제품 물량 구매 확대 (수의계약) 등
 - * 성과달성 및 ‘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’ 평가·심의 완료 과제 限
- (예 외) 성과공유 방법이 ‘수의계약’ 인 경우
 -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완료 후 수의계약 체결



※ (참 고)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활용 시 ‘수의계약 허용’ 근거 신설 (‘19년 예정)

✓ 성과공유제 이후 수의계약 가능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

*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2항에 제3호 신설

- 제57조의4(회계처리 등) ①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 - 1.·2. (현행과 같음)
 - 3. (신설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○ 수의계약 진행 프로세스 개선(간소화) 추진

- 추진대상 : 성과공유제 과제수행 등 완료 과제 *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
 - 개선내용 : 수의계약 진행 시 결재 라인의 간소화 추진
 - 필요성 : 성과공유 계약에 따른 수탁기업과의 원활한 수의계약 체결 지원
- * 단, '성과공유제' 관련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완료 후 공단 내부 규정 개정사항 등 준수

✓ 추진대상 : 성과 달성 인정 과제 +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완료

- 1) 성과달성 인정 과제 中 '성과공유' 방법이 수의계약 인 과제로서,
- 2)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행한 '수의계약용 확인서' 발급 완료 과제

✓ 계약규모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

- (공사·용역·물품) **2천만원 이하 계약** * 추정가격 기준 (부가세 제외)

✓ 개선방안 : (현행) 이사장 사전보고 + 본부장 결재 ➡ **(변경) 실·처장 전결**

※ **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적용** (부서별 연 4회, 전체 35회 기준)

5] 성과공유제 「과제확인」 신청·확인서 발급

○ 성과공유 완료과제 확인 신청 (공 단 → 추진본부)

- 심의위원회 승인 및 성과공유 완료과제 대상 성과공유과제 확인 신청
- ➡ 성과공유과제 (최종) 확인 신청 필요 서류 * 제도 보완·개선 시 추가 반영

✓ 등록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(공단) 및 수탁기업의 **수행내역** (공동노력 등)

✓ 등록과제로부터 발생한 **성과** 및 이를 **증빙하는 서류** 등

✓ 위탁기업 (공단)과 수탁기업간의 **성과공유** 및 이를 **증빙하는 서류**

○ 성과공유과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(추진본부 → 공 단)

6] (기 타) 성과공유제 추진부서 인센티브 * 내부경영평가(BSC) 가점 확대

○ 성과공유과제 발굴 (1건) : ('18년) 0.1점 → ('19년) 0.25점

○ 성과공유과제 채택 (1건) : ('18년) 0.1점 → ('19년) 0.25점

III 향 후 일 정

□ 과제 발굴 공모 → 과제 선정 → 과제 등록 → 과제 시행

- 과제 공모 : 외부·내부 동시 공모 시행 ('19.6.17.~7.14.)
- 과제 선정 : 심의위원회 개최 통한 심의·선정 ('19. 7월 말)
- 계약 체결 : 선정 과제별 해당부서 계약 체결 ('19. 8월)
- 과제 등록 :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('19. 8~9월)
- 과제 시행·관리 : 부서별 과제 추진 ('19. 9월~)

구 분		2019년		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	11	12
성과공유 과제공모	'19년 성과공유 과제 발굴 공모							■					
	'19년 성과공유 과제 선정·계약 (2차 심의위원회 개최 등)								■	■			
과제등록	'19년 성과공유 과제 등록									■	■		
과제시행	'19년 성과공유 과제 시행·관리										■	■	■